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 및 협조요청

1. 귀 기관의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관리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4.9.)를 통해 확진자 수가 전국 1일 평균 550명대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과 국민적 피로감 가중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2단계로 유지**하되,
 - 최근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유흥시설 등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하는 등 개별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에 관한 방역 조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적용 기간 : 2021년 4.12.(0시) ~ 2021년 5.2.(24시)까지
 - 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완화 불가조치 사항 >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시간(22시) 조정

< 주요 지침 >

① 중점관리시설 등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 시설 :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포함) 및 홀덤펍
- 조치 내용 : **집합금지**

붙임 1. 수도권 등 유흥시설 및 홀덤펍 집합금지 조치 1부

○ 대상 시설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파티룸

○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 2.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② 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 시설 :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스포츠키팀(관람)장, 실외체육시설,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 백화점·대형마트 외 종합소매업(300㎡ 이상)

○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 '학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2021.2.15. 안내한 「미인가 대안 교육 시설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의 적용 방역수칙 조정 안내(2.15.)」 따라 적절한 방역수칙 적용

붙임 3.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③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 시설 : 수도권 숙박시설
-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 4. 수도권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④ 모임·행사

○ 조치 내용 :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그 외 모임·행사 단계별 조치기준에 따라 제한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예외 허용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내 100인 미만이면 실시 허용

붙임 5.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⑤ 고위험사업장

○ 대상 시설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 8. 수도권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⑥ 직장근무

○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 수칙 의무화

○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⑨ 그 외

- 종교시설
 - 방역지침 의무화
 - * '종교시설'로 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기 안내한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의 적용 방역수칙 조정 안내(2.15.)」에 따라 적절한 방역 수칙 적용
- 교통시설 : 대중교통 시설(국제항공편 제외)
 - 방역지침 의무화
- 국공립시설
 - 소관 부처·지자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 철저 관리하며 운영
 - 경륜·경정·경마장 운영 중단, 카지노는 수용 가능인원의 20% 이내 제한,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 가능 인원의 30% 이내로 제한 원칙
 - *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외의 시설은 민간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부처·지자체 판단에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
- 아파트 내 편의시설 등은 업종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
- 사회복지 이용시설
 -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 기타시설
 - 대상시설: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경륜·경마·경정*,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장·박람회장, 마사지업·안마소, 국제회의 시설
 - * '경륜, 경정, 경마'은 운영중단 유지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4. 각 협단체에서는 동 자료(붙임)를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이메일, SNS 등을 통하여 신속히 소속 기업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수도권 등 유흥시설 및 홀덤펍 집합금지 조치.
2.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4. 수도권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5.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6. 수도권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7. 수도권 기타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8. 수도권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9. 수도권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0. (210409)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끝.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수신자 한국산업단지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업종별 협·단체

주무관

박혜수

과장

전결 2021. 4. 12.

김재준

협조자

시행 산업일자리혁신과-443 (2021. 4. 12.) 접수

우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어진동) / <http://www.motie.go.kr>

전화번호 044-203-4222 팩스번호 044-203-4722 / oyeah5@motie.go.kr / 대국민 공개